

이 보도자료는 금일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이진동
전화 031-5182-4313

보도자료

2019. 10. 2.(수)

자료문의 : 특수부장실
전화: 031-5182-4469
주책임자: 부장검사 전준철

제 목

국외 도피 前 성원그룹 회장 등 구속 기소

- 수원지방검찰청(검사장 윤대진)은 '19. 9. 18. 04:10경 약 9년 6개월 간 해외도피 생활 끝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前 성원그룹 회장 부부를 체포·구속 기소하고, 은닉한 범죄수익 40억 원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보전조치 하였음
- 수원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(국제협력단·범죄수익환수과), 법무부(국제형사과),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함께, 前 회장의 해외도피 이후 부터 이번 체포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(HSI), 연방 법무부 및 이민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각도로 송환을 추진해 왔음
- 그 결과, 前 회장은 '10. 8. 여권무효화 조치, 미국비자 취소 및 '17. 6.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결정을 받게 되었고, '18. 8. 미국 항소 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되어 승소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처와 함께 자진 귀국하게 된 것임
-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(단장 예세민)과의 공조를 통해 피고인들의 국내·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, 범죄수익 환수 및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음

1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 인적사항

- A○○(71세, 前 성원그룹 회장)
- B○○(67세, A○○의 처, 前 성원그룹 관광레저부문 총괄 부회장)

● 공소사실 요지

① A○○은,

- '06. 8.~'09. 8.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 상당 횡령 및 배임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·배임)]
- '07. 10.~'10. 6. 성원그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7억 원 상당 체불[근로기준법위반]
- '07. 12.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물로 가지고 있던 주식 59억 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하여 은닉[강제집행면탈]

② A○○, B○○은 공모하여,

- '07. 4.~'09. 12. B○○을 성원그룹 계열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 횡령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
- '10. 3.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'저가매각'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 원 수수, 범죄수익 은닉 [배임수재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

2

입국 및 체포 前 수사 경과

- '09. 8. 26. A○○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, 고발 접수
- '10. 3. 9. A○○ 미국 도피
- '10. 4. 9. A○○ 구속영장 발부(근로기준법위반)

- '10. 3.~9. A○○, B○○에 대한 배임수재·횡령·배임 검찰 수사 착수
- '10. 12. 23. A○○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(업무상횡령·배임)
- '11. 5. 21. B○○ 미국 도피
- '11. 8. 9. A○○, B○○에 대한 체포영장 각 발부(배임수재)

3 송환 추진 및 입국 경위

- '10. 4. 수원지검, A○○ 인터폴 적색수배
- '10. 6. 대검(국제협력단),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A○○에 대한 비자 취소 및 강제추방 요청
 - ※ 현지 주소지 추적 결과 및 허위사실(여행비자를 신청하면서 범죄전력 및 수사 중인 사실을 허위 또는 미기재)에 기초한 비자취득 사실을 미 국토안보수사국에 통보하여, '10. 8. A○○에 대한 비자취소 결정
- '10. 8. 수원지검, 외교부 통해 A○○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
 - 미국 국토안보수사국, A○○ 미국 뉴욕에서 체포
 - ※ 건강상 사유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강제추방재판 진행
- '10. 10. 대검(국제협력단),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하여 연방 법무부의 강제추방 재판 수행 지원(~19. 9.)
 - ※ 근로기준법위반 이외에도 횡령, 배임 등 범죄사실과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재판 지원
- '16. 7. 법무부(국제형사과), 미국 이민당국에 송환 협조요청 서한 발송
- '16. 9. 법무부(국제형사과), A○○, B○○ 범죄인인도 청구
- '17. 6. 미국 이민법원, A○○ 강제추방 결정(1심)
- '18. 8. 미국 항소이민법원, A○○의 항소 기각(2심)
 - ※ A○○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연방법원에 재심 청구

- '18. 8. 대검(범죄수익환수과)·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, 미 연방 법무부에 출장하여 항소 기각 이후 절차 협의 및 신속한 송환 촉구
- '19. 6. 법무부(국제형사과), 미 연방 법무부에 출장하여 재판결과 확인 및 신속한 송환절차 협의
- '19. 8. 02. A○○, 변호인 통해 수원지검에 자진입국 의사 표명
- '19. 9. 18. 수원지검, 인천공항에서 A○○, B○○ 각 체포
- '19. 9. 20. 수원지검, A○○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, 집행
 ※ B○○은 가담정도, 유대관계 등 이유로 판사 영장 기각

4 **의의 및 향후 계획**

- 검찰·법무부는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그룹총수 A○○을 상대로 미국 수사기관 및 연방 법무부, 이민당국과 다각도로 공조하여,
비자취소 및 강제추방요청, 이민재판 지원, 범죄인인도청구 등 사법 절차를 통한 송환에 적극 노력한 결과,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여 자진 입국한 A○○부부를 체포하게 되었음
-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은닉 재산 40억 원 상당을 찾아내어 기소 전에 추정보전조치 하였고, 앞으로도 해외불법재산 합동조사단과 공조하여 피고인들의 국·내외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철저히 환수하고,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음
 ※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은 역외탈세,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 은닉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. 6. 21.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임
- 한편,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·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임 ☑